

<p>7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</p> <p>8. 수정안요지</p> <p>가. 수정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용자금의 목적이외 사용이 우려되므로 목적 이외에 사용한 용자금도 보조금과 같이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함. <p>나. 주요골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목적이외에 사용한 보조금 및 용자금은 즉시 회수하도록 함.(안 제12조제2항) <p>9. 소수의견요지 : 없음</p> <p>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 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 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안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②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보조금 및 용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때에는 목적 이외에 사용한 보조금 및 용자금은 즉시 회수 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 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 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조중 “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”를 “대기환경보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6조의2”로, “용자”를 “보조 및 용자(이하 “재정지원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</p> <p>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2조(재정지원대상) 자금의 재정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보조대상 :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.용자대상 :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<p>제3조의 제목 “(용자한도액)”을 “(재정지원한도액)”으로 한다</p> <p>제4조의 제목 “(용자 및 상환조건)”을 “(재정지원조건 등)”으로 하고,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	<p>③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·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제6조의 제목 “(용자계획의 공고)”를 “(재정지원계획의 공고)”로 하고, 동조본문중 “매년도말까지”를 “매년도초에”로, “다음년도 자금용자계획”을 “당해년도 재정지원계획”으로 하며, 동조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재정지원대상 2. 재정지원총액 3. 재정지원한도 4. 재정지원조건 및 절차 등 <p>제7조의 제목 “(용자신청 등)”을 “(재정지원신청 등)”으로 하고, 동조본문 및 제3호·제4호중 “용자들”을 각각 “재정지원을”으로 한다.</p> <p>제8조의 제목 “(용자심사회의 개최 등)”을 “(재정지원심사회의 개최 등)”으로 하고, 동조제1항중 “자금의 용자대상, 용자금액”을 “자금의 재정지원대상, 금액”으로, 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자금용자심사회의”를 “천연 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심사회의”로 한다.</p> <p>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10조(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) ①시장은 재정지원신청금액이 재정지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대상자별로 재정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그 조정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</p> <p>②시장은 확정된 재정지원대상자 및 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재정지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의 제목 “(자금대출)”을 “(용자금대출)”으로 한다.</p> <p>제12조제1항 및 제3항중 “용자를 받은 자”를 “재정지원을 받은 자”로 하고,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②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보조금 및 용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목적 이외에 사용한 보조금 및 용자금은 즉시 회수 하여야 한다.</p> <p>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--	---

【별지 제2호서식】

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및충전시설설치자금지원신청서

신청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사업체명	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			
사업명칭				
면허종류		면허일자		면허번호
사업목적및내용				
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				
사업비	총사업비	원	지원받고자 하는 금액	보조율
자기자본액		원	자기자본 부담액	원
사업기간				
<p>위와 같이 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및충전시설설치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.</p> <p>200 년 월 일</p> <p>신청인(대표자) (인)</p> <p>서울특별시장 귀하</p>				
거래은행	은행명		예금주	계좌번호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계획서(지원자금 사용계획 포함) 2. 법인등기부등본 3. 주주총회 결의록 4. 전년도 대차대조표 			